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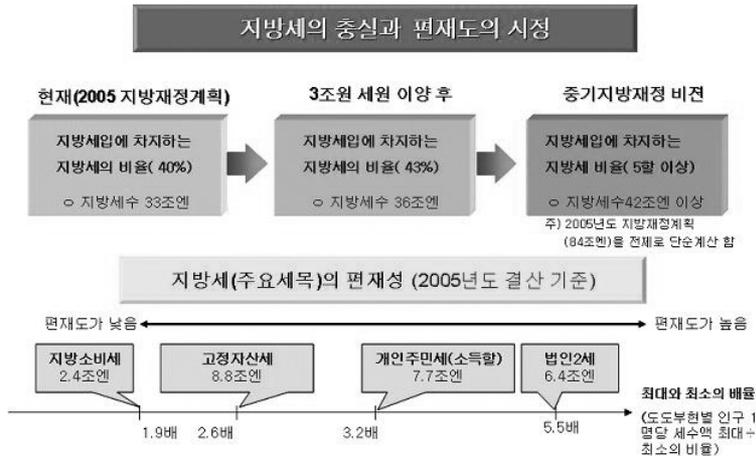
일본의 지방세법령 개정과 고향세 도입

박 균 조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서기관

1. 들어가는 말

일본은 2000년의 「지방분권일괄추진법」시행으로 기관위임 사무 폐지,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관계 설정 등 제반 조치가 단행된다. 2007년부터는 지방에 3조 엔 규모를 세원 이양하는 「삼위일체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간 세수 편차를 시정하고자 「후루사토(故郷)稅」창설안을 확정한다.



우리 나라도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 편재를 시정하고자 25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세 제도가 입법 완료(2007. 7월 지방세법 개정)되기에 이르지만 「고향세 납세제도」는 다소 생소하다

이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실현이나 세수격차 해소 노력, 지역균형 발전전략 정책 수립시 참고로 하기 위하여 일본의 지방세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고향세 도입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2008년도 지방세제 개정안 주요내용

일본은 현재의 경제, 재정상황을 비추어볼 때 지속적인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 구축의 일환으로 소비세를 포함한 세 체계의 발본적 개혁이 행해지기까지의 잠정조치로서 지방법인 특별세·지방법인특별양여세를 창설하는 것을 확정했다.

아울러 개인주민세에 있어 기부금 세제의 발본적 확충, 자동차 취득세 및 경유 거래세 특례 조치의 적용기한 연장, 상장주식 등의 양도익·배당의 경감세율 폐지 및 손익통산 범위의 확대 및 공익법인 제도개혁에 대응 등을 실현하는 것으로 하여 2008년도 지방세제 개정안을 마련한다.

우선 2008년도 지방세제 개정안 중 개인주민세의 기부금 세제와 지방간 재정력 축소 문제에 대하여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중앙과 지방의 세원 구조

연도별 정부 예산상 세원 비율은 2005년도는 총 세수 773,259억 엔(국세 440,070억 엔 : 지방세 333,189억 엔)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56.9 : 43.1이다.

2006년도는 56.8 : 43.2이고, 2007년도는 총 세수 938,398억 엔(국세 534,670억 엔 + 지방세 403,728억 엔)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57.0 : 43.0를 보인다.

2007년도의 중앙정부 세입은 경기회복에 의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어 세수 전체로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7% 증가하는 것으로 된다.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세수 비율은 64.5%이다. 2005년도(53.5%)에 비해 10%이상 늘어난다.

2007년도 지방재정은 삼위일체 개혁(3조엔 규모의 세원이양)에 힘입어 지방세 수입만 전년 대비 15.7%(5조 4,745억 엔) 증가하는 것으로 된다. 지방 양여세(△81%), 지방특례교부금(△62%), 지방교부세(△4.4%), 국고지출금(△0.3%) 등은 모두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수입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247억 엔($\Delta 0.0\%$ / 2006년 831,508억 엔 \Rightarrow 2007년 831,262억 엔) 정도 줄어 든 구조이다.

한편, 지방세입에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의 추이를 보면, 2001년도에는 35.9%(지방세 33조 5,388억 엔 / 순계 결산)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39.8% (지방세 33조 3,189억 엔 / 총세입 83조 7,687억 엔/예산), 2006년도에는 42.0% (지방세 34조 8,983억 엔 / 총세입 83조 1,508억 엔/예산), 2007년도에는 48.6% (지방세 40조 3,728억 엔 / 총세입 83조 1,262억 엔/예산) 를 보인다. 地方歳入에서 차지하는 地方税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 2008년도 세제개정안

가.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제 확충

(1) 공제대상 기부금 확대 등

개인 주민세 기부금 공제 적용대상에 소득세의 기부금 공제 적용대상으로 되는 기부금(국가에 대한 기부금 및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 등에 대한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금을 제외함) 중 지역에 있어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도도부현 또는 시구정촌이 조례에 의해 지정한 것을 추가한다.

현행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어 적용대상 기부금에 관한 공제율은 도부현민세에 대해서는 4%, 시정촌민세에 대해서는 6%로 한다.

이 경우 도도부현이 조례에 의해 지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도부현민세에서, 시구정촌이 조례에 의해 지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시구정촌민세에서 각각 공제한다.

기부금 공제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총 소득금액 등의 30%(현행 25%)로 인하하며 기부금액 공제 적용 하한액도 5천 엔(현행 10만 엔)으로 인하한다.

즉 조례에 의한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정하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지정한 기부금을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창설한 것이다.

현행 주민세 공제대상 기부금에 소득세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되는 기부금(공익사단,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인정 NPO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국가,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지정한 기부금을 추가하였으며,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세제 검토

도도부현 또는 시구정촌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상기(1)의 세액공제 적용에 덧붙여 당해 기부금이 5천 엔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에 90%에서 기부를 행한 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한계세율을 공제한 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개인 주민세 소득할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의 5분의 2(4%)를 도부현민세로부터, 5분의 3(6%)을 시정촌민세에서 각각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또한, 신고절차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편리하고 간이한 방법에 의해 행할 수 있도록 소요의 조치를 강구한다. 상기 (1) 및 (2)의 개정은 2009년도 분 이후의 개인 주민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후루사토(고향)에 대하여 공헌 또는 응원을 하고 싶다는 납세자의 생각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세제의 검토를 행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중 적용 하한액(5천 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의 한도까지 소득세와 합하여 전액 공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은 ①과 ②의 합계액을 세액공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 5천엔】×10%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 5천엔】× [90%-0~40%]

[소득세 한계세율]

②의 액에 대해서는 법인주민세 소득할 액의 10%를 한도로 하며, 대상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과 합하여 총 소득금액 등의 30%를 상한으로 하였다.

나. 지역간 재정력 격차 축소

지방세제는 거듭되는 지방분권의 추진과 그 기반으로 되는 지방세 재원의 충실을 꾀하는 속에서 지방소비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지방법인과세의 실재를 발본적으로 다시 바꾸는 것 등에 의해 편재성이 작고 세수가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개혁을 진행한다.

이 기본방향에 따라 소비세를 포함 세 체계의 발본적 개혁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법인과세 실재의 검토를 포함하여 지방세 개혁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긴급한 정치문재인 지역간 세원편재 시정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소비세를 포함 세 체계의 발본적 개혁이 행해지기까지의 잠정조치로서 법인사업세의 일부를 분리하고, 지방법인특별세 및 지방법인특별양여세를 창설하는 것에 의해 편재성이 작은 지방세 체계 구축을 꾀하는 것을 실현하려고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사업세(소득할 · 수입할)의 표준세율을 인하하고, 지방법인특별세를 창설한 것이다. 즉 법인사업세(소득할 · 수입할)의 일부(2.6조 엔)를 분리하고 지방법인특별세(국세)를 창설하는 것이다.

(1) 법인사업세(소득할 및 수입할에 한함)

법인사업세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하며 2008.10.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억 엔 초과 보통법인의 소득할 표준세율을 연 400만 엔 이하의 소득은 현행 3.8%에서 개정안은 1.5%로 하고 있다.

(2) 지방법인특별세 창설

지방법인특별세 수입액은 용도를 한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도도부현에 양여하는 것으로 한다. 지방법인특별양여세의 양여기준 등은 다음과 같이 하며 2009년도부터 양여한다.

① 지방법인특별세 기본 구조

- 1) 납세의무자 등 : 지방법인특별세는 법인사업세(소득할 또는 수입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하는 국세로 한다.
- 2) 과세표준 : 법인사업세액(표준세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할액 또는 수입할액으로 함)으로 한다.
- 3) 세율 : 소득세할 액에 의해 법인사업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소득할액에 대한 세율은 81% 등으로 한다.
- 4) 신고납부 : 지방법인특별세의 신고납부는 도도부현에 대하여 법인사업세와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 5) 부과징수 : 지방법인특별세의 부과징수는 도도부현에서 법인사업세와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 6) 국가에 지불 : 도도부현은 지방법인특별세로 납부된 액을 국가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적용기일 : 지방법인특별세는 2008.10.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3) 지방법인특별양여세 창설

- ① 지방법인특별세의 수입액으로부터 아래 ②의 액을 공제한 액을 2분의1은 인구로, 나머지 2분의1은 종업원 수로 안분하여 양여한다.
- ② 전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 재원 초과단체에 대해서는 이번의 개정에 의한 감수액으로 산정한 액이 재원 초과액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 감수액으로 산정한 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당해 넘는 액을 ①에 의한 양여액에 가산한다.
- ③ 지방법인특별세 세수는 도도부현에 지방법인특별양여세로서 양여하며 2009년도 부터 양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Ⅲ. 후루사토(故郷)세 도입 방안

1. 도입 배경

세원이양과 함께 일본 정부는 세수 격차를 해소코자 한다. 일본의 자치단체간 세수 격차는 매우 심하다. 인구 1인당 세수 편차는 심각하다. 전국 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 도도부현세 지수는 東京都는 174인데 비하여 오키나와 현은 61에 불과하다. 최대와 최소는 2.9배의 차를 보인다.

기초단체인 시정촌 세수의 중심을 이루는 고정자산세(우리나라의 재산세와 과세대상이 비슷함) 지수는 東京都내 23개 특별구는 189이지만 사이타마市는 81이다. 최대시와 최소시는 2.2배의 차이를 보인다. 법인세만 보면 東京都와 나가사키현 간의 세수 격차는 6.5배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지역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민세의 10% 상당액을 자기의 고향 등 다른 지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후루사토稅(고향세 납세제)” 도입을 결정한다.

2. 「후루사토 납세」의의

일본의 스가(菅) 총무大臣은 2006년 10월 24일에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행한 지방분권 개혁에

관한 제안에서「매력있는 지방, 자율적인 지방을 만드는 지방분권 개혁에 대하여(소위『뿔 Plan』)」를 발표하고 이후의 분권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즉 “내각이 일체가 되어 3년간의 지방분권개혁추진법(2006년 12월에 3년간의 한시법으로 성립되어 현재 시행 중)을 제정하고 이에 응하여 보조금, 교부세, 세원이양을 포함한 세원배분 개혁”을 행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지지하는 지방세의 충실 대책으로 “국가와 지방의 세수비율을 50% : 50%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세 충실을 도모하며, 세수 편차가 작은 세목의 충실을 꾀하는 것 등에 의해 편재도가 작은 지방세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의 세목과 세원배분을 대담하게 개혁하고 보조금·교부세 등 삭감액의 일정비율을 세원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현행 국가와 지방의 세수비율 60%: 40%를 3년 이내에 50% : 50%로 되는 것을 실현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4할 자치」로 불리는 일본의 세원배분 지방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정한 계획이다.

후루사토(고향) 납세 논의는 2007년 5월의 총무대신의 문제제기로 시작한다. 많은 국민이 지방의 고향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자라고, 진학이나 취직을 기회로 도시로 나와 그 곳에서 납세를 한다.

그 결과 도회지 지방단체는 세수를 얻지만 그들을 기른 「고향」의 지방단체에는 세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도회에 살고 있어도 자신을 길러준 후루사토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로 얼마라도 납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은 것은 아닐까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 논의는 국민 각층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신세를 진 고향에 가능하면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마음의 심금을 울린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공감에 여러 가지 형태로 표명되고 미디어에서도 빈번하게 보도되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생각을 세제로서 형태화하는 것은 이론적, 제도적, 기술적 곤란함이 있다고 많은 관계자로부터 지적되었다. 더욱이 대도시부의 단체장들은 후루사토 납세제도가 세수 감소로 되는 것으로 반론의 목소리가 컸다. 이처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후루사토 납세는 국민의 일대 관심사로 된 것이다.

후루사토 납세가 국민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에는 적어도 3가지의 큰 의의가 있다.

첫 번째, 납세자의 선택이다.

세는 국가나 지방의 행정 서비스를 조달하는 공공의 생활을 지지하기 위해 불가결하다. 납세자가 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국가도 지방도 존립할 수 없다. 그래서 엄격하고 공정한 세제 하에서 국민은 의무로서 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조세제도는 한번 결정되면 국가 및 지방단체의 과세권에 기초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된다. 이것이 근대사회에서의 전통적 세제이다.

후루사토 납세는 이에 대하여 가령 납세분의 일부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자신의 의사로 납세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현되면 세제상 그리고 세 논리상 실로 획기적인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의사로 납세지를 선택할 때 납세자는 다시 세라는 것의 의미와 의의에 대하여 생각을 다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국민에 있어 세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납세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귀중한 기회로 된다.

두 번째, 후루사토의 중요함이다.

자신을 길러준 후루사토는 누구에 있어서도 부모님처럼 벽이 없는 것이다. 지방에서 태어나 자라고 지방을 후루사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건전한 국민생활을 지지하기 위해 지방단체가 맡고 있는 역할은 크다.

지방은 인재를 양육하는 것 이외에도 도회에 식료를 공급하고 삼림이나 하천 등 귀중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그 지방이 피폐하면 도회의 번영도 성립할 수 없다.

후루사토 납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후루사토의 중요함을 자신들 생활을 지지해 주고 있는 자연의 혜택에 감사하고 길러준 사람들에의 생각을 새롭게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 만큼은 아름다운 향토를 사랑하고 길러 준 후루사토의 은혜에 감사하는 본래의 인간성 회귀의 귀중한 계기로 된다.

또한, 출생지나 과거의 거주지에 한정하지 않고 소위 「2지역 거주」를 행하고 있는 지역에 공헌하고 싶다는 사람,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연이 된 지역 등을 응원하고 싶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후루사토 납세 도입에 의해 이와 같은 소위 미래지향 관점에서 후루사토를 생각하는 사람들에 있어 자신이 응원하는 지역에 공헌하고 싶다는 진지한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풍부하며 환경에 친밀한 지방을 기르는 것으로 연계되어 가는 것이다.

세 번째, 자치의식의 진화다.

후루사토 납세가 실현하면 납세를 받고 싶다는 전국 각지의 지방단체는 그 출신지나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매력을 많이 어필할 필요가 생긴다.

후루사토 납세로 된 돈이 어떻게 사용될까, 거기에 의해 어떠한 성과가 기대되는 것일까 등 효과적인 정보제공 자치단체간 경쟁이 자극될 것이다.

이 절차탁마는 후루사토 지방단체와 주민으로부터 납세를 받는 것이 서로 어울리는 지역 만들기의 귀중한 기회로 될 것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말해지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탱하는 개인주민세 세계에 후루사토 납세를 도입하는 것은 지역의 지방단체에 있어 스스로 자치 실재를 묻고 진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후루사토 납세 실현에 의해 납세자와 지방단체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것이 기대된다.

지방단체에 있어서는 그 단체를 응원하고 지켜내 주고 있는 납세자가 전국 각지에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후루사토 납세에 의해 얻어진 수입을 납세자의 뜻에 따른 시책에 활용해 가는 것을 통해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내발적 발전이 촉진되는 것이 기대된다.

또한 납세자에 있어서는 후루사토 납세를 행하는 것을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 참가의식이 높아지고 후루사토의 지방단체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기대된다. 이처럼 후루사토 납세에 의해 납세자와 지방단체 사이에 소위 “상호를 서로 높이는”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는 것도 기대된다.

역시, 후루사토 납세가 지방단체간 세수격차 시정을 돕는 것의 기대도 있지만, 후루사토 납세에 대해서는 국민이 후루사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것을 돕는다는 의의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후루사토 납세 의의가 지방자치 관계자 간에 이해되면 입장 차이에 의한 상호 이해를 극복한 지방자치 전체에 있어 큰 의의를 갖는 새로운 제도 구축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관계자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알기 쉽고, 쓰기 쉬운 구조로

이와 같은 의의를 갖는 후루사토 납세 구상이지만 그것을 제도화하고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알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구조로 되는 것이다.

(1) 후루사토 개념

후루사토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지만 출생지인가, 양육지인가라는 점을 납세 조건으로서 엄밀히 증명하는 것은 필히 용이하지 않다. 그 이상으로 납세자가 어디를 후루사토로 생각할까,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후루사토 납세의 사상 보다 중요하다는 견지에 서서 납세자가 선택하는 곳을 후루사토로 인정하는 넓은 관점을 취하는 것으로 했다.

(2) 기부금 세제의 진화

후루사토 납세를 어디까지나 세의 분할로 생각하면 거기에는 많은 이론적, 제도적 장애가 걸린다. 조세는 법률에 의해 납세 당국에 과세권이 보장되지만 거주지 이외의 지방단체에 강제성을 수반하는 과세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고 또한 개인주민세로 생각하는 경우 「수익과 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등 이론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다.

한편, 기부금세제를 응용하고 진화시키면 이들의 문제를 클리어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납세자가 후루사토에 공헌하고 싶다는 후루사토 납세 본래의 취지를 원활하게 실현할 수가 있다. 역시, 제도의 구체적 검토에 있어서는 납세자 부담이 매우 증가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3) 국가의 역할

후루사토 납세는 개인 주민세 이전의 문제이고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후루사토 납세는 지방단체 뿐 만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갖는 것이고 본래에서 말하면 이 의의는 지방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도 스스로의 국토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점에서 후루사토 납세제도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국가도 상당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한, 국가재정이 지방재정과 나란히 자동차의 양 수레바퀴라는 것에 비추어 보면 국가도 응분의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후루사토 납세에 있어 국가와 지방이 각각 일정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하고 소득세와 개인주민세 쌍방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적당하다.

(4) 개인 주민세 세액공제와 절차 간소화

현행 기부금 세제에서는 지방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되어있고 기부금액에 세율을 곱한 액의 경감조치가 받아들여지지만 세액공제 쪽이 납세자에게 알기 쉽고 공헌의식도 일어나므로 소득세와의 관계를 발판으로 하면서 세액공제 비율을 전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 적용액에 대해서는 개인주민세에 있어 납세자간의 공평성 관점에도 배려하고 개인주민세 소득할 세액의 10% 상한을 설계하며, 동시에 5천 엔의 하한을 설계한다.

또한, 기부신청과 세액공제를 받을 때까지 납세절차를 가능한 한 간소화하는 공리를 행한다.

(5) 기부를 받는 지방단체의 설명 노력

기부를 받는 지방단체는 기부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어떠한 성과로 연계될까를 설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성질은 아니지만 각 지방단체에서는 투명하고 알기 쉬운 자치를 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후루시도稅 도입 전망

일본 정부가 당초 검토했던 방식은 납세자가 주민세를 최대 10%까지 자기의 고향 등 다른 지역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징세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문제가 많아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기로 바뀐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자치단체간 주민세 기부 유치는 치열해 질 것이다.

고향세 납세제는 특히 過疎化가 심각한 속에서 세수감소에 고민하는 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고, 현행 기부금 공제의 제약을 완화하면서 납세자가 소위 납세지를 선택하는 것 같은 구조로 선진화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2007.7.29일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하여 참의원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고향세 도입에 소극적이므로 향후 입법 절차는 결코 밝지만은 않다.

주민세는 거주지에서 향수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를 거주 지역이 아닌 고향 등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수익과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크다.

한편, 이러한 논란 속에도 과소지역에서는 조례를 통해 이미 기부를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다.

예를 들면, 홋카이도(北海道)에 있는 니세코町의 「고향 만들기 기부제도」나 나가노(長野)縣 야스오카 무라(泰阜村)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기금」등 이다. 자치단체 홈페이지 상에서 기부를 어필하고 있다. 